

고등군사법원

결정

사건 2004초기17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신청인 참여연대(공동대표: 박상중, 이상희, 최영도)

피의자 고석
계급 대령
소속 합동참모본부 법무실
주소 본적

원처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04. 6. 29. 불기소 결정 2002형 제128호 사건

결정일 2004. 11. 11.

주문

이 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.

이유

1.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

이 건 재정신청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.

피의자의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정한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증죄의 소추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추요건으로 본 법리오해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.

2. 본 군사법원의 판단

첫째,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위 재정신청에 대하여 개진한 의견에서 보듯이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정한 국회의 고발의무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등 의 처벌과 관련하여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는 취지로서 위 '고발'을 기소 요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.(대법원 1965. 12. 10. 선고 65도826 판결; 1961. 11. 16. 선고 61형상 543판결 참조)



둘째, 신청인은 재정신청서에서 위 법 제15조의 '고발'은 국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였 을 뿐이지 친고죄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2003. 12. 29. 소위 선앤문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이광재의 위증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 청 검사 조은석이 국회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. 그러나 본 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이광재에 대하여 "다만 국회 위증혐의는 국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."고 선고하였다.

셋째, 대법원의 위 판결 당시의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과 현 국회에서의증 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의 국회의 고발의무에 관한 조항은 위치의 변경은 있으나 조항의 문구에는 변화가 없어 위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 바와 같이 재

정신청서에 언급된 사건의 처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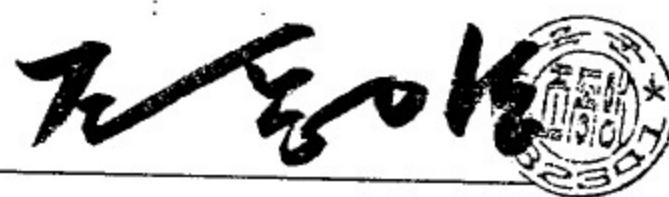
따라서 위 법상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고발도 없으므로 검찰관의 '공소권 없음'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주장처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 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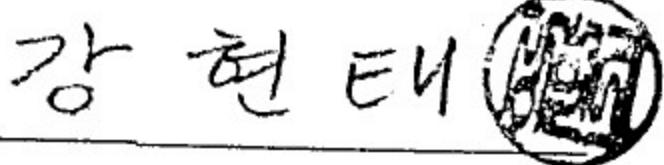
그러므로 신청인의 본 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 제3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 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재판장 군 판 사 대령 조 동 양



군 판 사 소령 강 현 태



군 판 사 중령 임 석 재

